

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한미 FTA체결 등 시장개방의 확대와 농업·농촌의 패러다임 변화로 농업의 어려움이 증대되어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설치한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.
- 농업인 단체의 무상위탁 관리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로 농업경쟁력을 확보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【 확보재산 】

☐ 농특산물 직판장 신축건물

- 위치 :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1-1번지 외 5필지
(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선산휴게소 내)
- 연면적 : 49.5㎡
- 건축가격 : 95,000천원(설계가격 기준)

3. 근거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 및 제34조
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5조

재산조서 현황

구 분			건 물		토 지		기 타
			동 수	연면적(m)	필 지	면적(m²)	
합계			1	49.5			
공 유 재 산	소계		1	49.5			
	행정 재산	계					
		공용재산					
		공공용재산					
		기업용재산					
	보통 재산	보존재산					
		잡종재산	1	49.5			
국 유 재 산	소계						
	행정 재산	계					
		공용재산					
		공공용재산					
		기업용재산					
	보통 재산	보존재산					
		잡종재산					

건물조서 현황

연번	건물명	소재지	지번	지목	연면적 (m²)	소 유 권		비고
						주 소	성명	
1	농특산물 직판장	옥성면 대원리	1-1번지 외5필	대지	49.5	구미시 송정동 50번지	구미시장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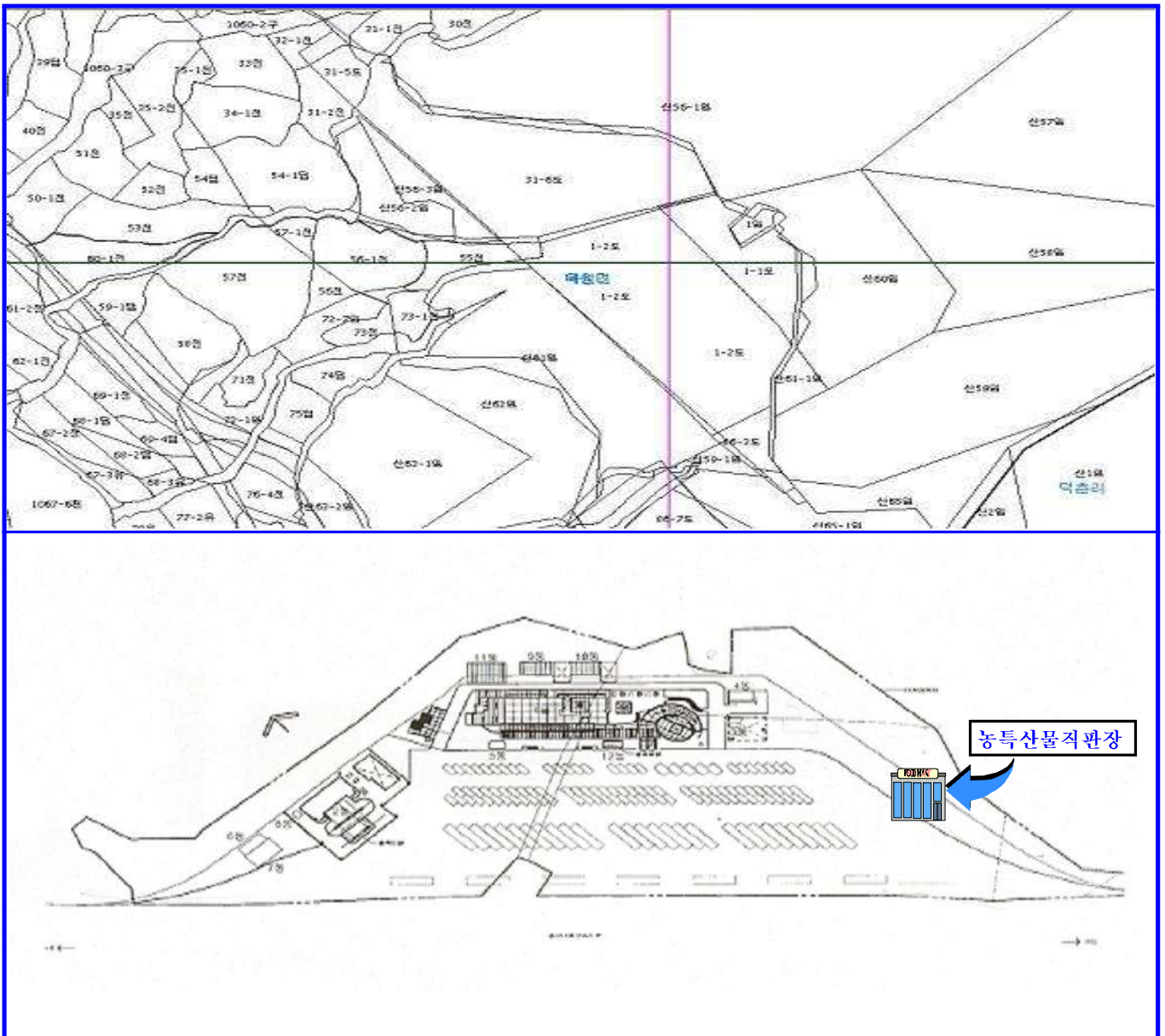
확보대상 건물

□ 재산의 표시 : 구미시 농특산물 직판장

○ 소재지 :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1-1번지의 5필지

○ 지목 및 면적 : 대지 (49.5m²)

□ 지적도 및 위치도



□ 현황전경도



《관 계 법 령》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
제27조(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, 관리위탁기간,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,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,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잡종재산을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

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29조(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) ①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0.27, 2006.12.30, 2008.4.18>
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법인·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
2.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
3.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
4. 임야를 목축·광업·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때
5.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
6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때
7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
8.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
9.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 없이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
10. 대장가액이 1천만원(특별시·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)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
12.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
13. 당해 시·도, 시·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
14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때
15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
16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
17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때

18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에게 대부하는 때
19.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때
20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
2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때
22.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때
23.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때
24.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
25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때

제35조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6.12.30>

1.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2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
 3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 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
-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
 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
 3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